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적 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공정무역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공정무역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공정무역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 심의 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
-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

- 공정무역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공정무역 마크, 인증서 등 공정무역 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19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18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라 함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으로서 특히 제3세계(북한포함)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하며,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총칭하여 공정무역이라 한다.
2. “공정무역단체”라 함은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한무역”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하는 무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단체에 대하여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정무역단체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정무역 사업) ① 공정무역단체는 저개발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윤리적 가격으로 수입하여 판매 하거나 가공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사업은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3세계 공정무역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제3세계 국가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
2. 착한무역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
3. 시민들이 착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정무역단체 공모 및 선정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는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 단체의 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9조(결과 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정무역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방향 제시
2. 시장이 공모하는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사항에 관한 심의
3. 착한소비 활동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정 및 변경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공정무역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 부터 매년 공정 무역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공정무역사업(보조금사업 포함) 완료 또는 종료시 30일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정) ① 시장은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공정무역 인증 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위원회에서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 사용권을 무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선정된 단체에서는 공정무역인증마크 사용권을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정무역인증마크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공정무역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즉시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대외무역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정성 · 투명성 등의 확보) ○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2. 소 요 비 용 : 연간 약 99,000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비용
계		99,000천원
민간이전 (공정무역 단체지원)	○ 공정무역단체 보조금 - 2개 단체, 95,000천원	95,000천원
일반운영비 (위원회 운영수당)	○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운영비 - 4회×10명×100,000원 = 4,000천원	4,000천원